

「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: 2026년 8월 24일
2. 제 출 자: 구미시장
3. 회부일자: 2026년 8월 25일
4. 상정일자: 2026년 9월 2일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II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 은 희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86개 지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축제위원회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보완하고 축제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의2)
- 나.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의3)

다.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라. 용어 정비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덕 진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축제위원회
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, 축제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
환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와 해촉 기준을
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
해촉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 적정한 절차를
거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안 제14조는 축제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축제의
계획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축제의 지속적인
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평가 및 결과 반영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, 평가대상과

지표, 외부기관 선정기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V. 토 론 요 지: 생 략

VI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VII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